

시산초등학교 학칙(생활규정)

2014. 3. 1.

교부

- 전면개정 (1999. 3. 1)
개정 (2005. 2. 25)
개정 (2006. 2. 24)
개정 (2011. 5. 1)
개정 (2012. 3. 1)
개정 (2012. 4. 10)
개정 (2015. 3. 1)
개정 (2016. 3.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시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시산길 45에 둔다.

학칙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학기제)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하계 휴가일까지, 제2학기는 하계휴가 후 개학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4월 20일(매년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한 선택)
3.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휴업일
4. 하계휴가
5. 동계휴가
6. 학년말 휴가
7. 토요휴업일 : 주5일 수업과 관련하여 토요휴업일을 실시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3, 4, 5, 6호의 휴가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
 - ③ 학교의 휴업일은 제1항 각 호의 휴업 일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2월 말까지)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학칙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h 1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편제는 당해 연도 학급배정에 의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전라북도순창교육청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 및 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졸업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로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본교의 평가는 초등 성장평가제의 도입으로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고 담임 재량의 학생 개인별 성장 평가를 도입하고 학생들의 핵심성취기준에 따라 도달 여부를 평가하고 성장평가제의 취지에 맞게 각 가정에 분기별 평가 안내를 실시한다. < 2016. 3. 28>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①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수가 배정된 교과는 주당 1시간 이내의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통합하여 운영

2. 직관, 통합, 경험, 자발성, 노작 등의 목표 체험으로 과학적 사고와 태도 배양

3. 단체 생활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

4. 현장체험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탐구보고서 작성 요령지도

5. 현장체험 관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는 평가의 기준과 내용 제시

6. 활동 영역별 체험학습의 수업모형 적용

7. 학교예산에 체험학습 예산 반영

③ 체험학습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교과 분석을 통한 학년별 체험학습 장소 및 시기 결정

2. 체험학습이 필요한 특별사안이 발생 시 체험학습 실시

3. 학교 및 학급 교육과정에 연간 체험학습 계획 수립 제시

④ 교외체험학습의 활동 유형에는 도·농(시·도)간 교류 체험학습(가족 간 여행 체험, 학교 간 이동체험 등), 테마 현장체험학습, 가족 동반 체험학습, 효도 방문 체험학습, 개별 위탁 체험학습, 흙 사랑 체험학습 등으로 한다.

⑤ 교외 체험학습별 출석 인정 범위 및 기간으로는 도·농(시·도)간 교류 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 출석인정, 개별위탁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 출석인정, 가족 동반 국내·외 체험학습과 고향 방문 및 효도체험학습은 연간 2주 이내 및 10일 이내 출석인정 한다.

< 2015. 3. 1>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

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취학의무의 면제

제14조(입학시기)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교육법 제 96조의 규정에 의한 학령 아동
2. 조기 입학 심의 위원회에서 승인한 만 5세 아동

제16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순창교육장의 배정과 학교장의 입학 허가로써 결정된다.

제17조(편입학)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 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의거하여 귀국 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전학) 본교에서 타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여권 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며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제20조(시행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21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중·고등학교는 2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초등학교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

제2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⑨, ⑩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

정할 수 있다.

- ②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6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 (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시상 및 학생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제27조(학생시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 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시상규정을 정한다.

- 제28조(학생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④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제1항의 내용을 지도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장은 징계 외의 지도방법으로 상·벌점제를 운영하며 필요 한 세부 규칙을 따로 정한다.

제30조(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 학교장은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두발·복장 등 용모)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은 두발·복장 등 용모를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알맞게 한다.

1. 복장과 두발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차림으로 자유롭게 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32조(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학교에 등교한 학생이 교육목적 이외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과 담임교사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학생 본인이 교육목적 이외의 물품을 소지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소지품 검사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3. 소지품 검사는 학생 본인 외 다른 학생이 없는 곳에서 실시한다.

제33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교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가급적 휴대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2.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였을 때는 수업교사의 처분을 받는다.

제34조(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① 학교장은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다.

- ② 교육 활동 중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방문 증을 패용한다.
- ③ 방문객이 교육 활동 중 교실 방문을 원할 경우 학교장이 동행하며 교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④ 교원이 교육·연구 활동을 위하여 출장 및 연가를 신청한 경우 학교장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보결교사 선정 등 조치를 취한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회원) 다모임(이하 ‘다모임’이라 함)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6학년 학생으로 한다.< 2015. 3. 1>

제37조(권리 및 의무) 다모임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8조(금지활동) 다모임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없다.

제39조(협의·지원사항) 다모임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40조(승인) 다모임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다모임 임원) 다모임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모임 회장 1인, 서기 1인

제42조(직무 및 선출) ① 다모임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의 및 토론 활동을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임시 담당 교사가 이임한다.
3. 다모임 임원은 전교생이며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는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선거는 학교장이 전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은 1~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015. 3. 1>

제43조(부서) 다모임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봉사부 : 학교 내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 및 봉사에 관한 사항
2. 학습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도서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부 : 학내 생활 규칙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제44조(회의) ① 다모임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다모임은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2015. 3. 1>

③ 다모임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다모임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9장 학칙개정절차

제45조(학교규칙개정절차) ① 학교장은 학교규칙의 개정안을 교직원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학교장은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학교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 시안 작성
2. 학칙 시안을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3. 학칙 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반영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4. 학칙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 학생회장 또는 전교어린이회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참석하여 학생의 입장을 대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5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06년 4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1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2. 3. 01.)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2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2. 4. 10.)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2년 4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2. 11. 8)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2년 11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학교생활규정)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3. 3. 1)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3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학교생활규정)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4. 3. 1)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4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학교생활규정)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5. 3. 1)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5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학교생활규정)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6. 3. 28)

①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16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학교생활규정)은 학교장이 정한다.